

2026년 전북형 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정정)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성장과 도약 발판을 지원하는 『2026년 전북형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월 28일
국립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성장과 도약 발판을 지원
- 지원대상** : 우수한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전북특별자치도내 본사를 보유한 창업기업
- 지원규모** : 총 15개사(최대 60백만원, 공급가액 기준)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및 특화 프로그램 지원

2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자이며,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5년(공고일 기준)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신청자격 기준일(공고일 기준 창업 5년이내 기업): 2021년 1월 28일 이후 창업기업(1월 28일 포함)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경영주로 최대주주여야 함

□ 창업인정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참고 1] 창업기업 확인 기준 참조)
 -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

□ 신청(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단, 신청 접수 마감일('26.02.20.) 혹은 주관기관이 제시한 기한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징수유예 포함) 중인 자(기업)

- * 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통주점업, 무도유통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기타 전담·주관기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전북형 창업패키지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26년 전북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내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지원 기간 : 8개월 ('26.3월~'26.10월)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금,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구분	지원 세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제품 제작, 자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지원금 최대 6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지원금 차등 지원 및 협약 체결 ** 창업기업의 사업비 중 대응자금은 천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협약 체결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 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신규X)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로 부담 사업화 지원금 및 자부담 현금 사용시, 공급가액 금액만 사용 가능(지출 시 부가세는 창업자 자부담)하므로 예산 산정시 공급가액 기준으로 설정 																																	
< 총 사업비 구성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사업화 지원금</th><th colspan="2">창업기업 대응자금</th></tr> <tr> <th></th><th style="width: 50%;">현금</th><th style="width: 50%;">현물</th></tr> </thead> <tbody> <tr> <td>총 사업비의 70% 이하</td><td>총 사업비의 10% 이상</td><td>총 사업비의 20% 이하</td></tr> </tbody> </table>		사업화 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사업화 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사업비 구성 예시 >																																	
사업화 지원금 (최대 60백만원)	총사업비	사업화 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현금</th><th style="width: 50%;">현물</th></tr> </thead> <tbody> <tr> <td>880만원</td><td>1,700만원</td></tr> <tr> <td>10.3%</td><td>19.8%</td></tr> </tbody> </table>	현금	현물	880만원	1,700만원	10.3%	19.8%																										
현금	현물																																		
880만원	1,700만원																																		
10.3%	19.8%																																		
< 사업비 비목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비목</th><th colspan="3">비목 정의</th></tr> </thead> <tbody> <tr> <td>재료비</td><td colspan="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td></tr> <tr> <td>외주용역비</td><td colspan="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td></tr> <tr> <td>기계장치 구입비</td><td colspan="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td></tr> <tr> <td>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td><td colspan="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td></tr> <tr> <td>인건비</td><td colspan="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사업비, 현금 대표자 지급 불가 _현물만 가능) </td></tr> <tr> <td>지급수수료</td><td colspan="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회계감사비, 기술이전비, 시험·인증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법인설립비 등) </td></tr> <tr> <td>회계감사비</td><td colspan="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화 지원금 내에서 기업 당 50만원 산정(필수항목) </td></tr> </tbody> </table>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사업비, 현금 대표자 지급 불가 _현물만 가능) 			지급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회계감사비, 기술이전비, 시험·인증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법인설립비 등) 			회계감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화 지원금 내에서 기업 당 50만원 산정(필수항목)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사업비, 현금 대표자 지급 불가 _현물만 가능) 																																		
지급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회계감사비, 기술이전비, 시험·인증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법인설립비 등) 																																		
회계감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화 지원금 내에서 기업 당 50만원 산정(필수항목) 																																		

	비목	비목 정의	
여비	•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화 프로그램_창업지원 			
특화 프로그램	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소개
	1	G-Networking (네트워킹)	선정기업, 권역 내 창업기업 및 유관기관 담당자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분야별 정보공유, 협업도모, 기술교류 등 지원
	2	G-Road (판로개척)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위한 사전 마케팅비(홍보물 제작 등), 기타 박람회 참가비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 판로개척 지원
	3	G-Build up (창업 아카데미)	창업기업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특강) 운영
	5	G-Mentoring (원스톱 창업상담창구)	(예비)창업기업들의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 매칭 원스톱 창업상담창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화프로그램_투자지원 		
	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소개
	1	G-Value up (연합 투자유치 IR)	창업기업의 성장자본 확대를 위한 투자IR 자료 작성, 피칭 교육, 컨설팅, IR 발표 등을 지원하여 투자유치 및 기업 성장지원
	2	G-Jump up (투자유치 역량강화)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기술평가 도출 지원

4

신청 · 접수

□ 신청 · 접수기간

- ’26. 01. 28.(수) ~ 02. 20.(금) 16시까지

※ 유의사항

- 증빙서류 누락, 내용 오기입 등으로 수정·보완은 신청·접수기간 내 1회 가능하며, 창업기업확인서를 제외한 서류의 경우 기간 외 제출, 수정 절대 불가
- 제출 파일명 및 메일 제목을 정확히 명시하여 E-Mail 발송
 - 2026년 전북형 창업패키지_창업기업명_대표자명
 - (수정 시) 수정본(날짜)_2026년 전북형 창업패키지_창업기업명_대표자명
- 접수마감일 16: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대표자는 발송시간 등을 고려하여 2시간 전까지 제출 필요(참고사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는 동 공고문의 붙임 양식([붙임 1])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매출액·고용·투자유치 자료,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동 사업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

□ 신청방법 (※하기 2단계 모두 진행하여야 함)

- [1단계] 이메일 접수(온라인 신청)
 - 접수처: startup@ksnu.ac.kr
 - 파일명: 2026년 전북형 창업패키지_창업기업명_대표자명
 - 메일 제목명: 2026년 전북형 창업패키지_창업기업명_대표자명
- [2단계] 구글폼 접수(온라인 신청)
 - 접수처: <https://forms.gle/kcVXaw8A7VtJvJDF9>
 - 제출내용: 기업명, 대표자 및 실무자 연락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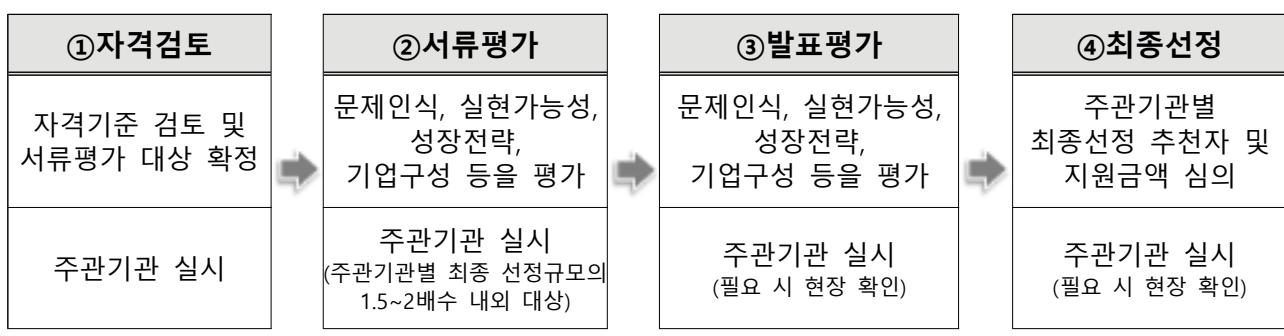
* 선정 절차 등에 대한 원활한 안내를 위하여 '[2단계] 구글폼' 필수 제출할 것

5

평가 및 선정

□ 선정평가

< 창업기업 선정 절차(안) >



①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도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주관기관별 최종 선정규모의 1.5~2배수 내외) 확정

< 서류평가 항목(안) >

세부평가	배점	평가내용
1. 문제인식 (Problem)	20점	1-1.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1-2. 제품·서비스의 목적(필요성)
2. 실현가능성 (Solution)	30점	2-1. 제품·서비스의 개발방안
		2-2.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3. 성장전략 (Scale-up)	20점	3-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3-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4. 기업 구성 (Team)	30점	4-1. 대표자·직원의 보유역량 및 기술보호 노력
		4-2. 지역사회 내 사회경제적 효과 창출 및 ESG 경영

③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개발방안,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참석하여야 함

< 발표평가 항목(안) >

세부평가	배점	평가내용
1. 문제인식 (Problem)	20점	1-1. 사업 동기와 준비의 적정성
		1-2. 사업 추진 목적의 구체성
2. 실현가능성 (Solution)	30점	2-1. 아이템 현황 및 차별성
		2-2. 협약기간 내 사업계획 이행 가능성
3. 성장전략 (Scale-up)	30점	3-1. 성장가능성의 객관성
		3-2. 사업계획의 완성도(항목 간 연계성)
4. 기업 구성 (Team)	20점	4-1. 내부 역량 확보 및 계획의 적정성
		4-2. 외부 역량 확보 및 계획의 적정성

④ **현장확인** : 최종선정 예정기업 중 발표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 가능

□ 최종선정

- 주관기관의 지원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기업 선정 및 창업기업별 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 사업과 동일한 창업아이템(과제)로 신청한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등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과 동시 수행(중복 수혜)가 불가능함(최종선정자 대상 점검 예정)

□ 추진일정(안)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일정(안) >

공 고 국립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 '26.1.28.(수)	창업기업 신청 · 접수 E-Mail 접수 접 수 처 : startup@ksnu.ac.kr '26.1.28.(수) ~ 2.20.(금)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국립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 '26.2~3월 중
협약체결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개인, 법인) '26.3월~10월	협약준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창업기업 현금부담금 입금 '26.3월 중	지원대상 선정 공지 접수 E-Mail 공문 발송 '26.3월 중

- 창업기업은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창업기업은 주관기관이 제시한 기한 내(협약시작일 이후 1개월 이내 등)에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을 지정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창업기업은 동 사업과 동일한 사업아이템(과제)로 신청한 초기창업 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등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과 동시 수행(중복 수혜)가 불가능함
- 창업기업이 가진 사업비의 권리·의무가 법인에게 귀속되더라도 사업비의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 등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창업기업은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창업기업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창업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전담/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할 수 있음'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④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사업계획서상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할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중 1인이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동 사업 협약체결자 외의 대표자도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본 사업 신청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hwp)(권고)** 및 PDF 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사업 세부관리기준, 매뉴얼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의 관련 자료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할 수 있음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의 대표자(동 사업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할 수 있음
 - * 발표 평가 시, '제품·서비스의 개발 방안' 부분은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관련 직원 (프로그램 개발자 등)이 질의에 대한 응답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창업이력 (판단기준)	상세 구분			창업여부
상속 / 증여	개인	상속(증여)받은 사업과	동종유지	불인정
			이종변경	창업
창업이력 없음	법인	상속(증여)받은 사업과	동종유지	불인정
			동종의 신규법인 설립	창업
창업이력 있음	개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변경	창업
			동종창업	불인정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2년 초과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창업
	법인기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업
			이종창업	불인정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동일인인 경우	창업
			동일인이 아닌 경우	창업
			법인전환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창업
			이종창업	창업
			동종창업	불인정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2년 초과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자회사 해당	불인정
	기존법인의 형태변경 (조직변경 등)	동종유지	자회사 해당되지 않음	창업
			기준 법인사업자 폐업	창업
			이종변경	불인정
			동종유지	창업

[참고] 본 기준표는 참고용으로,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여부로 창업 인정 여부 최종 확인 예정

1.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준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인 경우 같은 업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동일인"이란, 개인사업자가 단독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서 기존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함
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나.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식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란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로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말함.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과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
4. 창업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5. [경과조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2020.10.8)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본다.
6. 이종업종 및 동종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판단
(세세분류 일치 시 동종업종 판단, 세세분류 불일치 시 이종업종 판단)
7. "창업여부"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서 위 기준에 해당. 단,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내만 본 사업 신청 가능
8. 설립 당시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였더라도 사업 개시 5년 이내에 해당 사유(과점주주 지위 상실, 지분율 감소, 기존 법인 정리 등)를 해소한 경우에는 해소한 날부터 창업자로 인정함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